

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-117호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9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'20.6.4일 발표한 「융복합·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」에서 환전·송금업무의 위·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
-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

2. 주요내용

가. 환전·송금업무 위·수탁 관련(안 §20조의4 내지 §20조의6)

-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·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, 위탁사무의 범위 (§20조의4), 위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(§20조의5), 위탁방법 및 절차 (§20조의6) 등을 규정

나.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

(안 §21조의4② 내지 ③)

-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,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

다.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(안 §21조의7④, §21조의11, §37조③13)

-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·인가·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

라.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(안 §35조②)

-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,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,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: 외환제도과, 전화 (044)215-4752, 팩스 (044)215-8137, 이메일 ja9595@korea.kr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

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
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
- 전자우편 : ja9595@korea.kr
- 팩스 : 044-215-4819

4. 그 밖의 사항

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f.go.kr>)
「법령 → 입법예고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